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41호 2022. 12. 13.(화)

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598호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3
제1599호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7
제1600호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13
제1601호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602호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1603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1604호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1605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1606호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3
제1607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608호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49
제1609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1610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	56

【훈 령】

제311호 공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66
-------------------------------	----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의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등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6. “안전관리요원 등”이란 시설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소방서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긴급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해당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 보호자 및 대리인 신청 시 작성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 률 지 원 요 청 내 용				
<p>「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공주시장 귀하</p>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문화, 관광,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해설 활동)”을 “(활동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해설사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외국인 대상 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5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12월 13일

공주시 조례 제1603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고”를 “고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대건조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대건조물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경우에는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4조”를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향토문화유적보호 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서

(명 칭)

(주 소)

(소 유 자)

위 문화유산을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근대건조물 관리대장							
근대건조물명				관리번호			
소재지				지정연월일			
소유자	주소						
	성명						
건축 연도		층수		건축 면적		연면적	
연혁 및 지정사유							
<p>(사 진)</p>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 재 지				
지원결정일		지원구분	<input type="checkbox"/> 근대건조물 <input type="checkbox"/> 특화거리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사업대상지 현황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층 수		구조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중 “현재 공주시에 2년”을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으로,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를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계좌”를 “금융계좌 또는 지역화폐(공주페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제7조제4항관련)

연번	주소	1대(효행대상자)			2대(부양하는자)			3대 이상			지급 대상자	계좌입금 (은행, 계좌번호)	공주페이 (핸드폰 번호)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성명	생년 월일	전입일				

확인자 : 직

성명

(서명또는인)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12월 13일

공주시 조례 제1605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1길 39(반죽동)내”를 “당간지주길 7(반죽동)”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매뉴얼을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소방시설, 가시설물, 가스시설 안전조치 등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 ① 주민 또는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지체 없이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조) 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공개공지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12월 13일

공주시 조례 제1609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공주시”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할(日割) 계산해 지급한다.

제3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소급하여”를 “소급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25,890원으로 한다.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25.)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12월 13일

공주시 조례 제1610호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검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검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히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4.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공주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지와 관련된 사임권고를 거부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 의원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3조제6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	-----	-------------------------------

신고자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 . ~ . .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 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뒤쪽)

신고자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